

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

제의연월일	2025. 2. 7.
제 의 자	의 장

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

의 안 변 호	
------------	--

제의연월일: 2025. 2. 7.

제 의 자: 의 장

1. 제의이유

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와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제9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 및 보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의 원 명	사 임	보 임	비 고
김 영 길 (산동읍, 해평·장천면)	기획행정위원회	문화환경위원회	
김 춘 남 (상모사곡·임오동)	문화환경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
이 명 희 (고아읍)	산업건설위원회	기획행정위원회	

※ 임기 : 전 상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함.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제4조, 제5조 및 제9조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4조(상임위원회 위원)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 <개정 2022.6.15.>

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,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2.6.15.>